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1조 본 위원회는 숙명인문학연구소 학술지, 『횡단인문학』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로 함)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숙명인문학연구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숙명인문학연구소 회칙에 의거하여 15명 내외의 국내외 편집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둔다.

제4조 본 위원회는 숙명인문학연구소 학술지, 『횡단인문학』에 게재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학술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숙명인문학연구소 소장(이하 연구소장으로 함)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위촉하며 학술지의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연구업적이 뛰어난 회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전공 영역별로 학술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편집간사) 편집간사는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사 논문의 송부 및 심사 결과를 취합·보고하고, 학술지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의

제8조(정기편집회의) 제1차 정기편집회의는 논문투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차 정기편집회의는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임시편집회의) 임시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장이나 5인 이상의 편집위원의 동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상임심사위원의 활동) 본 위원회는 논문심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상임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3. 심사 규정 및 절차

제11조(심사의 주관)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은 본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제1차 정기편집회의에서 전공 영역에 따라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단, 논문투고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13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횡단인문학』 심사서 양식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며, 심사위원은 투고자에게 비공개로 한다.

제14조(논문심사비) 소정의 논문 심사비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며 논문심사비 영수증은 논문 심사서로 대신한다.

제15조(심사의 기준)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연구주제의 독창성(5점)
2. 연구방법의 타당성(5점)
3. 논리전개 및 논문구성의 충실성(5점)
4.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5점)
5. 학술논문으로서 기술적 완성도(5점)

심사위원은 위의 각 항목을 A(5점), B(4점), C(3점), D(2점), E(1점) 등급으로 판정해 심사서에 체크하고, 위 항목의 합계 점수에 의거해 종합평가 난에 (1)‘게재가’(25~23점), (2)‘수정 후 게재’(22~18점), (3)‘수정 후 재심’(17~13점), (4)‘게재불가’(12점 이하) 중 한 가지 등급을 선택해 최종 판정한다. 더불어 심사서에는 심사평과 함께 판정의 근거와 수정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제16조(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정기편집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 처리한다.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판정 (1)은 가, (2)는 수정, (3)과 (4)는 부로서 분류해 종합하고,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① (가, 가, 가) (가, 가, 수정)은 게재한다.
- ②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은 수정 후 게재한다.
- ③ (가, 가, 부) (가, 수정, 부) (수정, 수정, 부)는 편집위원회가 수정 후 게재 혹은 게재 불가를 최종 판정한다.
- ④ (가, 부, 부) (수정, 부, 부) (부, 부, 부)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17조(심사결과와 통보) 편집간사는 제2차 정기편집회의의 결과를 신속하게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심사위원 인적사항 및 점수를 제외한 심사서를 함께 송부한다.

제18조(게재가 논문)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서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한 최종 논문이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해당 편집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19조(게재불가 논문)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후에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제20조(투고 제한)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표절 및 중복 게재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최소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21조(논문게재 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연구소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22조(편집위원회 최종 권한)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칙

개정된 본 편집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은 『황단인문학』 제7호(2021년 2월 28일 간행)부터 시행한다.